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11. 7 선고 2023가단158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B, 변호사 김동한

피고C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철

변론 종결2024. 10. 17.

판결 선고2024. 11. 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8,186,56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인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1. 1. 원고에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2016. 11. 30.까지는 이 사건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2016. 12.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시설의 생활복지사로 각 근무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 입사하기 이전에 1994. 7. 21.부터 1996. 4. 29.까지 대전시립정신병원에서, 1996. 4. 30.부터 2005. 10. 31.까지 E병원에서, 2005. 11. 1.부터 2006. 6. 30.까지 F에서, 2006. 10. 9.부터 2007. 10. 31.까지 G병원, 2007. 11. 1.부터 2012. 12. 31.까지 H병원에서 각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경력'이라 한다).

라. 논산시장은 2022. 6. 9.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의 생활복지사로 전직한 이후에는 이 사건 경력을 호봉산정에 있어서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경력의 80%를 유사경력으로 근속년수에 산입해 피고의 호봉을 확정하여 2016. 9.경부터 2021. 8.경까지 피고에게 54,012,530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과 76,091,380원¹⁾의 보조금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명령과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2. 8. 2. 논산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2023. 8. 23. '이 사건 환수처분 중 처분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6. 9.경부터 2017. 5.경까지의 보조금 9,372,230원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환수처분 중 66,719,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2022구합104586,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3. 9.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6. 12. 1.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의 생활복지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상 이 사건 경력이 호봉산정에 있어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착오로 이 사건 경력을 고려하여 호봉을

확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호봉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6.경부터 2021. 8.경까지 피고가 받아야 할 급여에 비해 48,186,56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초과 지급된 급여는 ①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거나,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 이 사건 호봉산정에 의한 것인데, 원고가 2021. 9. 논산시에 호봉재확정 보고를 함으로써 위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호봉산정에 의하여 초과 지급받은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것일 뿐 이 사건 호봉산정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논산시에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피고의 급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가 부당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생활복지사로 전직한 2016. 12. 1. 이후로는 피고에 대한 호봉을 확정함에 있어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이 사건 경력을 제외하였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경력을 기초로 확정된 호봉에 따라 2017. 6.경부터 2021. 8.경까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한 급여가 48,186,560원²⁾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하,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된 급여를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그리고 갑 제12 내지 14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호봉의 재확정 사유로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해당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확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21. 9. 13. 이 사건 경력을 제외하고 피고의 호봉을 12호봉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재확정을 하여 논산시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거나 이 사건 호봉산정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쌍방 간에 의사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정해진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피고의 호봉을 획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간호조무사에서 생활복지사로 전직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획정된 호봉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하려면 위와 같은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거나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 사건 재확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내용에 의하면 호봉의 재확정은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에 장래를 향하여 호봉을 변경하는 것인바, 호봉의 획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변경하는 '호봉의 정정'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논산시보건소가 2021. 9. 14. 작성한 '이 사건 시설 종사자 호봉재확정 보고'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호봉은 2021. 9. 1.자로 장래를 향하여 변경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확정에 의하여 피고의 호봉이 22016. 12. 1.자로 소급하여 변경되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3)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피고에 대한 호봉확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원고가 일방적으로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피고의 호봉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내용이 당연히 근로계약의 본질을 이룬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 협정서 제6조 제1항은 '종사자의 급여지급은 매년 하달되는 보건복지가족부 인건비 지원지침에 의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1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는 근로자의 호봉을 소급하여 정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도 마찬가지다.
 - 4) 이 사건 합의가 '간호조무사로서 의료기간 등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2021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가는 해당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592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21년 정신건강사업안내'는 국가가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복지시설 등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았을 경우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을 위반한 사법상(私法上) 행위까지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 '2021년 정신건강사업안내'는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원고의 이 사건 호봉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무관하게 원고의 일방적인 규정 해석의 잘못으로 인한 착오로 발생하였음이 주장 자체로 명백한데, 이는 원고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점에서도 피고에 대해 그 취소에서 더 나아가 소급하여 기왕에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숙미

1) 피고 이외에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복지사로 근무하였던 소외 1에 대한 급여 중 일부에 대한 보조금환수를 더한 금액이다.

2) 이 사건 환수처분 중 피고의 급여에 해당하는 54,012,530원 중 이 사건 환수처분일인 2022. 6. 9.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6. 9.경부터 2017. 5.경까지의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